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933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행정·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함
- 나.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추진 필요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중앙 정부 및 각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

다. 출연 사무내용

- 1)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3)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
- 4)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

라. 출연 기관 개요

1) 연 혁

- '84. 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서울시 마포구)
- '86.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 '15.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
- '16.12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2)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3) 위치도



4) 규모

- 조 직: 원장, 부원장, 1감사관, 1센터, 4실, 1단, 1국

-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연구기획실, 지방행정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지역발전연구실, 사회혁신연구단, 행정국

- 인 력

- ▶ 이 사 : 총 30명 (당연직 22명, 임의직 8명)

※ 당연직 이사: 원장 1, 행정안전부 4,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 17

- ▶ 직 원 : 정원 102명 / 현원 81명

(2019. 7. 31. 현재, 단위: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투자분석직
정원	102	1	63	18	2	18
현원	81	1	47	17	1	15
과부족	△21	-	△16	△1	△1	△3

5) 지원시설

- 규 모: 청사 건물 지상3층, 지하2층 / 연면적 5,742.68m²
- 건축년도: 2016년('16.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
- 시설현황

층별	주요 용도
지하2층	주차장, 체력단련실, 기계실, 전기실
지하1층	자료실
1층	로비, 행정국, 연구기획실
2층	임원실, 지방재정연구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3층	자치행정연구실, 지역발전연구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여성휴게소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20년 출연금 편성액(안): 250백만원 ※ '19.7월말 현재

2)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원
 -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각 250백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150백만원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과 기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1984.9)되었음.
- 연구원은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사업, 연구용역 수탁과 교육훈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운영되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기금 충당 등을 위해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5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출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가 포함된 이후 출연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사회 의결(각 시도 기획조정 실장이 당연직 이사)을 거쳐 매년 분담금을 출연해 운영하고 있음.
 - 16개 시·도는 각 2억 5천만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천만원의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음.
-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분담에 대응해 시·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를 1건씩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현안이슈 대응 방안 리포트를 시·도별로 1건씩 추가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연구원이 추진한 서울시 관련 연구과제는 2015년 이후 각각 5건과 2건에 불과하며, 연구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과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과제 선정에 주의가 요구됨.

〈서울시 관련 정책과제 연구 수행〉

※ 시도 당 1과제

구분	연구과제 명	부서
2015	서울시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경영개선 방안연구	물재생시설과
2016	지방분권 실태 진단분석(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조직담당관
2017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제도 및 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	재무과
2018	자치분권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재정관리담당관
2019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지자체의 재정확충효과 분석(수행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시 관련 현안이슈 대응방안 리포트 지원〉

※ 시도 당 1리포트

구분	연구과제 명	부서
2018	서울시립노인요양시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어르신복지과
2019	승용차요일제에서 마일리지 제도로의 통합 및 활성화 방안(수행중)	에너지시민협력과

-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2020년 회계연도 출연금 요구액은 2억 5천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임.
- 출연금은 2015년 1억원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2019년 2억 5천만원으로 증가되었음.

【출연금 요구 요지】

구분	2019년	2020년	비고
출연금	41.5억원 - 16시·도 : 각 2.5억원 - 세종시 : 1.5억원	41.5억원 - 16시·도 : 각 2.5억원 - 세종시 : 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개발 및 지원 · 시·도 정책과제 · 정책이슈리포트 · 자치분권 발전과제 · 자치분권 국정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과제 (시·도 개별) · 17과제 (시·도 개별) · 15과제 · 20과제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과제 등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혁신 포럼 구성 및 성과창출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 및 직무교육 (5~6과정, 2박3일)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정책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발전방안(과제) · 지방의원대상 연찬회 및 역량강화 교육 · 지방의회 공동세미나 (지역학회 연계) · 지방자치단체 공동세미나 (시도연구원 연계)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정책Brief 외 2종 	(계속)	

- 최근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대폭 증가하는데 비해, 정부 출연금은 소폭 증가함¹⁾에 따라 출연금 분담 비율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함.

〈최근 5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정 부	2,106	2,241	2,129	2,329	2,854
지방자치단체	2,125	2,580	3,300	3,300	4,150

※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경영공시(2019.8월 기준)

라. 추가의견

-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된 바 있음.
- 이는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출연 관행을 막아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의회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입법 목적임을 감안할 때 연구원 출연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용이하도록 산출근거와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강동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5년 21억 6백만원에서 2019년 28억 5천 4백만원으로 7억 4천 8백만원(35.5%)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은 21억 2천 5백만원에서 41억 5천 만원으로 20억 2천 5백만원(95.3%)이 증가하였음.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0)에서는 출자·출연의 동의 절차와 동의안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출연금 집행계획〉

- 정책연구과제 연구사업비 : 100백만원
- 연구인력 인건비 : 80백만원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학술행사 및 정책간행물 발간 사업비 : 30백만원
- 특별·광역 시도별 현안이슈 대응방안 지원 사업비 : 40백만원

※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년도 출연금 요구서

- 아울러, 출연금의 출연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사회 등을 통해 해당 출연 기관의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서울시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도지사는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